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의 방역수칙 알림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0589('21.11.17.)호, -9538('21.10.13.), -9371('21.10.5.)호
2. 우리 부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중앙점검반 및 국가동물 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한 차량 이동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가금농장, 축산 관계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및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가금농장 등 현장점검 과정 중 가금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가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관련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장 출입자가 동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체(도축장, 사료공장, 분뇨·퇴비업체 등) 자체적으로 소속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의 방역수칙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
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국립축
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
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
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
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
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
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
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
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박제민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1. 12. 2.
자방역과장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 12. 2.) 접수
11147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parkjemin@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